[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 규정]

제1조 목적

미주 지역(북미, 남미 대륙의 각국가를 통칭)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운영방향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 2 조 미주본부의 구성

1. 미주본부 지도목사 :

사단법인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(이하 '사단 본부 이사장')의 위촉을 받아 영적 코칭 리더십으로서 아버지학교의 비젼을 따라 아버지학교 운동의 <mark>영적 방향을 관리한다.</mark>

2. 미주 본부장:

- 가. 미주본부 운영위원회와 미주본부 지도목사의 추천과 미주본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, 사단 본부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나. 비상근이며, 임기는 2년이고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.
- 다. 미주본부 지도목사의 <mark>영적지도를</mark> 받으며, 본부의 관리 주체이며, 대외적으로 미주 본부를 대표한다.
- 3. 본부 사무국:

미주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미주본부 사무국을 두고, 사무국장이 관장한다.

- 4. 미주본부 이사회: 개인 이사와 기관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.
- 5. 미주본부 운영위원회 : 미주본부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.
- 6. 지역 지도목사 및 운영위원회: 지역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.

제 3 조(헌신의 의무)

아버지학교의 모든 봉사자 및 사역자는 아버지학교에 헌신의 의무를 진다. 헌신의 의무라 함은 아버지학교 봉사자 및 사역자로서 타 봉사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, 봉사자 모임 및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에 각자의 은사에 따라 적극 참여해야 함 을 의미한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09 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3. 이 규정은 2011 년 1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4. 이 규정은 2012 년 2월 19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[미주본부 이사회 규정]

제 1 조(목적)

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(이하 '본부' 또는 '미주본부')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미주본부 이사회(이하 '회의')를 두다.

제 2 조(구성)

- 1. 이 회의는 구성원에 따라 개인이사와 기관이사(교회 및 단체 대표)로 구성한다.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위촉하고, 이사장은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부이사장, 이사회 총무 등을 선임할 수 있다.
- 2. 이사는 아버지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다른 직분도 겸임할 수 있다.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관한다. 단, 미주본부장 지명에 대한 승인을 위한 회의는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주관한다.

제 3조(자격)

- 1. 개인이사는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자로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를 통해 임명된다.
- 2. 기관이사는 이사로 헌신하고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위촉한 지역의 영향력 있는 사역 단체, 교회 또는 목회자로 선임한다. 기관 이사 모임은 본부 지도목사가 회의를 주관한다.

제 4 조(위촉과 회비)

이사는 기존 회원의 추천 또는 미주본부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. 이사는 월납 회비 미화 100 달러 이상, 또는(추가) 매년 1 월중에 연납회비 미화 1 천달러 이상 기준의 회비를 납부한다.

제 5 조(임기)

이사장 : 비상근이며 임기는 2 년이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(추가)이 사 : 임기는(1년) 2 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.

제 6 조(회의 소집)

- 1. 정기 이사회는 11 월중에 이사장이 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.
- 2. 미주본부장과 지도목사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(의결 정족수와 그 효력)

이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/3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두로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 8 조(협의 및 의결사항)

- 1. 미주본부장 지명안에 대한 승인.
- 2. 신규 이사 위촉에 대한 승인.

- 3. 미주본부 운영위원 선임에 대한 승인.
- 4. 미주본부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 검토 및 권고.
- 5. 미주본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와 승인.
- 6. 미주본부 재정 보고에 대한 검토 및 감사
- 7. 기타 미주본부장 또는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상정한 의안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07 년 10월 1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09 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3. 이 규정은 2011 년 1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[미주본부 운영위원회 규정]

제 1 조(설치목적)

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의 주요활동에 대한 종합적 운영방향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, 실행하기 위하여 미주본부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(구성)

- 1. 이 위원회는 제 3조의 아버지학교 운영위원과 미주본부(이하 '미주 본부'라 한다) 사무국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.
- 2. 미주본부장이 이 회의와 산하 위원회를 주관하며, 사무국장에게 운영을 위임하여 미주 본부장을 보좌하도록 할 수 있다.
- 3. 이 회의가 지명하는 봉사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3 조(선임과 해임)

- 1. 본부 운영위원은 본부 운영위원 3 인 이상이나, 미주본부의 추천을 받고,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미주본부장이 수시로 선임한다.
- 2. 아버지학교 헌신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본부 운영위원으로 헌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장 재량으로 해임할 수 있으며, 연속 2 회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총무의 1회 구두 경고 후, 2회 불참한 경우 해임된다. 질병과 타주 출장이나 아버지학교 봉사로 인한 불참은 제외한다.

제 4 조(읶기)

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제 5 조(헌신의 의무)

미주본부 운영위원은 아버지학교에 헌신의 의무를 진다.

헌신의 의무라 함은 아버지학교 헌신자 및 사역자로서 타 봉사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, 봉사자 모임 및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에 각자의 은사로 적극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.

제 6 조(회의 소집)

- 1. 정기회의는 연 4 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mark>회의 일시와 장소와 방법은 본부장이</mark> <mark>정하고 개회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.</mark>
- 2.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, 미주본부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7 조(의안의 제안)

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구성원이나 미주본부 사무국이 발의할 수 있으며, 회의 3 일전까지 미주 본부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 특별히 부의할 사항이 없으면 현안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정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
제 8 조(의안의 통지)

총무는 회의에 특별히 부의할 사항이 있을 때 회의 2 일 전에 구성원에게 통신(전화, e-mail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의결정족수와 그 효력)

- 1. 이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의 협의로 의결한다.
-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나 사무국에 의사표시를 참석으로 간주 할 수 있다.
- 2. 이회의에서 최종의결된 안건은 미주본부 지도목사와 미주본부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되다.

제 10 조(의결 및 업무)

- 1.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사항
- 2. 미주본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에 대한 사항
- 3. 신규 개설 지역의 지원
- 4. 후원금 모금 및 집행에 대한 사항
- 5. 미주대회, 각종 본부주관 행사 등 미주본부 사역에 대한 추진 및 지원
- 6. 미주본부 사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
- 7. 기타 미주본부장과 미주본부 지도목사가 제안한 안건

제 11 조(의결사항의 효력)

- 1. 미주본부, 각 지역 운영위원회 및 본부실행위원회는 본부 운영위의 의결사항을 수용할 의무를 진다.
- 2.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 회의의 의결사항을 수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부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재의 또는 대안을 구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의결사항의 통보)

이 회의의 의결사항은 총무 또는 서기나 사무국이 미주본부 이사회와 각 지역 운영위 원회를 통하여 문서나 e-mail 로서 전달한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04 년 1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07 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3. 이 규정은 2009 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4. 이 규정은 2011 년 1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[지역 운영위원회 규정 (표준안)]

제 1 조(설치목적)

각 지역 두란노 아버지학교(이하 "지역 아버지학교"라 한다)의 개설 및 봉사자 모임 등에 대한 종합적 운영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결정하고, 개설에 대한 사역과 재정책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역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 2 조(구성)

- 1. 이 위원회는 3 회 이상 아버지학교가 개설된 지역에서 헌신된 봉사자의 <mark>추천으로 미</mark>주 본부에 건의하고 미주 본부장은 본부 지도목사와 상의하여 지역 운영위원회를 구성 한다.
- 2.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대하고, <mark>미주본부장의</mark> 지명을 받는다.
- 3. 동기회장은 선출과 동시에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한다. 단, 회계 년도의 잔여 기간에 임기가 만료된다.
- 4. 위원장이 이 회의와 실행 위원회 등을 주관하며, 위원장은 총무 등을 선임하여 위원 장을 돕게할 수 있다.
- 5. 지역 지도목사는 지역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면 본부 지도목사와 본부장이 협의하여 지역 지도목사를 승인한다.
- 6. 미주 본부의 특성상 각 언어권의 지도 목사를 둘 수 있으며 이경우 언어권 지도 목 사는 지역 목사와 동등하게 취급한다.

제 3 조(운영위원의 선임 및 해임)

- 1. 두란노 아버지학교 수료 후 헌신된 봉사자 중에서 기존 운영위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2. 운영위원은 아버지학교 헌신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위원으로 헌신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에, 참석위원 2/3 이상 찬성으로 해임된다. 3. 연속 2회, 또는 년간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여 총무의 1회 구두 경고 후, 2회 불참한 경우 자동 해임된다 (단, 불참의 사유가 질병, 아버지학교 업무나 봉사 등 불가피한 경우 불참횟수에서 제외한다).

제 4 조(헌신의 의무)

구성원은 아버지학교에 헌신의 의무를 진다.

헌신의 의무라 함은 아버지학교 헌신자 및 사역자로서 타 봉사자에 모범이 되어야 하며, 봉사자 모임 및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에 각자의 은사로 적극 참여해야 함을 의미한다.

제 5 조(운영위원의 임기)

운영위원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안식 후 재선임된 경우 신임과 같다.

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전체위원의 1/4 이상은 신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.

제 6 조(지도목사의 자격 및 임기)

- 1. 자격: <mark>아버지학교를 수료한 자로</mark> 아버지학교 사역의 비전에 동참하고 지역에서 존경 받는 목회자중에서 지역 아버지학교에 자원하여 헌신할 목회자로 한다.
- 2. 지역운영위원회의와 전임 지도목사의 추천을 받아 미주본부에서 위촉한다. 지도목사의 임기는 1 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미주본부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.
- 3. 지역의 필요에 따라 지도목사를 2 명이상 그룹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 7 조(지도목사의 역할)

- 1. 지도목사는 지역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자격을 가지며 미주본부를 대리하여 지역 아버지학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영적 코치 역할을 감당한다.
- 2. 개설 준비 모임에서 봉사자의 사명과 헌신에 대한 격려를 하고 사역에 대한 코칭을 감당한다.
- 3. 영적 코치로서 헌신자들의 신앙과 삶과 사역 전반에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며 돕는다.
- 4. 개설되는 아버지학교의 강사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운영위원장의 협의 요청에 자문하고 미주본부에 강사를 추천하도록 도와야 한다.
- 5. 지도목사는 본부의 위촉을 받아 아버지학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.
- 6. 지역 운영위원회나 아버지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도목사는 미주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.
- 7. 지역 운영과 관련하여 아버지학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미주본부장은 본부 지도목사와 협의하여 지역 지도목사의 활동 정지를 행사할 수 있다.

제 8 조(회의 소집및 운영)

- 1.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위원장의 재량에 일임한다.
- 2.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운영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3. 정기 회의는 1 부 예배, 2 부 회의 순서로 진행한다. 예배는 지도목사 또는 지도목사 가 지명한 자가 인도한다. 2 부 회의는 위원장이 인도한다.

제 9 조(의안의 제안)

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구성원이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3일전까지 총무는 지도목사와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특별히 부의 한(할) 사항이 없으면 주요 활동과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발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한다.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않는다.

제 10 조(의안의 통지)

운영위원장은 총무와 함께 회의에 특별히 부의 할 사항이 있을 때 회의 2 일전까지 구성원에게 통신(전화, e-mail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의결 정족수와 그 효력)

1. 이 회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전원의 합의를 통해 의결한다.

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로 위원장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

2. 이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지역의 지도목사와 운영위원장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되며 필요한 경우 지역의 지도목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. 재심의 요청된 안건은 참석한 운영위원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.

제 12 조(의결 사항)

- 1. 지역 아버지학교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 사항
- 2. 지역 아버지학교의 개설 및 진행에 관한 사항(일정, 장소, 각 팀장 인선)
- 3. 개설 예정 사역에 대한 진행자와 강사를 본부에 추천(소정의 훈련 과정을 거친 분)
- 4. 개설된 지역 아버지학교의 사역과 재정(결산 및 감사)에 관한 사항
- 5. 운영위원의 선임과 해임
- 6. 각 실행위원회가 팀별로 계획 입안한 사항

제 13 조(의결사항의 효력)

지역 아버지학교 관련자는 이 회의의 의결사항을 미주 본부의 규정 또는 관례에 배치하지 않는 한 수용할 의무를 진다.

제 14 조(의결사항의 통보)

이 회의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장이 봉사자 모임을 통해 발표하거나, 문서나 e-mail 로 전달한다. 또한 미주본부 사무국에도 통보한다.

보 최

- 1. 이 규정은 2004 년 1월 19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07 년 1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3. 이 규정은 2009 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- 4. 이 규정은 2012 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